

2023년도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 목 차

- I. 설 계 설 명 서
- II.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III.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IV. 보 안 대 책
- V. 기 타 사 항
- VI. 예 정 공 정 표
- VII. 설 계 예 산 서
- VIII. 위 치 도

# I .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 2. 과업목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전북 순창군 구리면 월정리 구간의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건설에 따른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장래 예상되는 교통 상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함.

## 3. 과업위치

구 분	노 선	시 점	종 점	사 업 규 모
순창 순창-구림	국지도55호선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전북 순창군 구리면 월정리	L=9.1km, 4차로 확장

## 4. 과업개요

- 교통영향평가 1식
- 과업연장 : L=9.1km

##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II. 일반과업지시서

###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토지이용실태 및 사회경제 교통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도로공사중과 도로사업 시행 후 교통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상의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개선대책 수립 및 대안제시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2. 주요과업내용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1.4.13.)」에 의하여 작성한다.
  - 가. 계획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 나. 토지이용실태 및 교통현황 조사 분석
  - 다. 관련 계획 및 주변여건 분석
  - 라. 교통수요 예측
  - 마.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및 문제점
  - 바.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효과분석
  - 사. 개선안 시행계획
  -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자. 보고서 작성
  - 차. 기 타

### 3. 세부과업내용

#### - 교통영향평가

##### 가.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는 구체적인 시설계획 및 주변교통체계 현황 등을 포함시켜 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개선대책과 관련 있는 사항은 발췌 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포함한다.

###### (2) 교통영향 요인파악

공사 중 및 공사후 등의 각 단계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분석방법 설정

사업노선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사회, 경제여건에 있어서의 교통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분석항목을 설정한다.

###### (4) 조사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나.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조사 분석

######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교통현황 조사·분석은 반드시 수립책임자가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긴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2) 조사항목

현지조사는 수립책임자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수립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 (가)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장래 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내용, 조사 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장래 토지이용 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 (나)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 조사지역별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운영 현황
  - 교통수단 분담율
  -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수준(평균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
  -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주요지점에서의 접근성

### 다.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관련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아래 계획을 포함한 제반 관련계획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토종합개발계획

- 사업지 관련 공공계획
- 영향권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 인접지 개발 계획
- 주변도로 확포장 계획 등

라. 교통수요 예측

- (1)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수요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를 사업완료 후 부터 5년 단위로 20년간 분석 예측한다.
- (2)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 시로 구분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터체인지간 차종별 교통량
  - 출입시설의 유출입 교통량
  - 출입시설의 램프별 교통량
  - 영향권내 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

마.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사업완공 후 1년, 5년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도 및 현행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변화
  - 교통안전 및 기타 교통상 문제점
- ※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 분석에는 가로구간 분석,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연결로 접속부 분석, 엇갈림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바.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효과분석

교통개선대책은 사업계획 또는 시설계획의 인·허가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수립내용과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자는 위 “마”항에서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개선방안 수립 시에는 사업지내의 주변 가로에 대하여 구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필요시 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진·출입 동선 체계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 등
- (3) 과업수행자는 본선구간 설치로 인한 지역분리 극복방안과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에 대하여도 제시하여야 한다.
- (4)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 분석으로 구분한다.
  - 대책별 분석은 종합 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 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종합적인 분석은 주변 교통에의 영향과 개선정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5) 종합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되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직접영향권의 경우 사업지 내부 종합개선안 도면과 동일한 축적의 도면에 수록할 수 있다)
  -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도시하고 주차장, 도시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

#### 사. 개선안 시행계획

- (1) 개선안의 시행계획에는 준수사항의 경우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시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2) 권고사항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당해 교통영향평가 수립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함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의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이해관계인의 이행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교통영향평가 수립의 교통개선 대책의 이행으로 인해 관계인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5) 교통개선 중 복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의무자별 원인유발 정도를 정량 분석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6) 교통시설관리청과 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일시, 협의내용 등을 기록한 협의일지를 교통영향평가서에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아.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분석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 자.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분석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1) 교통량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되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규모, 조사·분석결과 등을 종합, 정리하여 수립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2)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보정계수, 중복율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 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3) 수립보고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내용의 발생시기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인용내용의 수록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고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6.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자료 및 설계도는 본 업무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교통)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여 교통영향요인 및 교통조사 대상항목 설정, 교통수요 예측기법 및 수립보고서 작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본 과업에 참여 할 기술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인 인원수는 동 과업에 필요한 인원수로 한정한다.

10. 수립보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교통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1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13. 용역사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심의 후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Ⅲ. 특별과업지시서

#### 1. 평가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2. 설계변경조건

- 가. 교통영향평가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나. 본 용역의 용역비는 “기술용역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 3. 평가기준

- 가. 교통영향평가 수립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완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나.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사업시행 전·후의 교통영향 등에 대해 정밀분석·검토 후 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설계 도서에도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완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 4.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기술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용역 기술자문 시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자문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 5.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종 류	제 출 기 일	내 용	수 량
교통 영향 평가	착수 보고서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본 보고서	착수 후 90일 이내	교통영향평가서	40부
	최종 보고서	준공일	교통영향평가서(본안, 보완통합본용) CD(컴팩트디스크) 심의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10부 3부 1식 1식

## IV.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는 착수 시 제출한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소속회사 임직원에게 한하며,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작성된 회의자료 등은 발행부수 등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료작성 목적 종료 시에는 지체없이 회수 후 파기하여야 한다.

8. 용역성과물의 부수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다.
9. 용역성과물이 불량·과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10. 용역 과업 수행 중 관련자료 임의사용·유출 등 보안관리 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용역회사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11.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V.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당 공사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VI. 예 정 공 정 표

◎ 전 체 : 180일(6개월)

세 부 공 중 (교통영향평가)	착 수 일 로 부 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서론	████████												
2. 교통환경 조사·분석	████████████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4.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										
5.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									
6. 보고서 작성					████████████████								
7. 심의상정 및 사전검토 (보완서 제출)							████████████						
8.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9. 심의 의결사항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통보												████████████	

# I. 설 계 설 명 서

## II. 일반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 IV. 보 안 대 책

## V. 기 타 사 항

## VI. 예 정 공 정 표

## VII. 설 계 예 산 서

산출근거

## VIII. 위 치 도

구간

순창-구림

위치도

